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3실·국 이상 5실·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국 이상 6실·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

비고

1. 실·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2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교육감	실장	국장	과장·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 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학관 또는 3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장학관 또는 4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그 밖의 시· 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 학관		장학관 또는 3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장학관 또는 4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과·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1의2.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과장·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체제통합 지원 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위 표의 과장·담당관 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4명 이내

나. 경기도 교육청: 5명 이내

다. 그 밖의 시·도 교육청: 2명 이내

4.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감사기구”라 한다)는 과·담당관으로 두고, 그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제4호 및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그 밖의 시·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 9. (현행과 같음)